



##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칙

### 제 1 절 총 칙

제1조 (목적) 우리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학교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과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우리 학교는 명신여자고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 (위치) 우리 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260번지에 둔다.

### 제 2 절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 (수업연한) 우리 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입학자격) 우리 학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4.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제 3 절 학과 학급 수 및 학생정원

제6조 (학과) 우리 학교에는 보통과를 둔다.

제7조 (학급수) 학급수는 1학년 8학급, 2학년 8학급, 3학년 8학급, 전학급 24학급으로 한다.  
단, 학년별 학급수는 교육청 학생 수용계획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학생정원) 우리 학교의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생 수용계획에 따라 배정된 인원으로 한다.